

[2020년 개정세법에 따라 기본서 수정]

쪽		개정 또는 수정 前	개정 또는 수정 後
p.443	개정	(2) 보통징수 ②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②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p.446	오류	(5) 지방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100.00분의 25)	(100.000분의 25)
p.447	오류	(6)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100.00분의 25)	(100.000분의 25)
p.448 p.534	개정	<b>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b>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100분의 75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100분의 30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100분의 20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100분의 10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100분의 90 ①을 → ②번으로 ②를 → ③번으로 ③을 → ④번으로 ④를 → ⑤번으로 ⑤를 → ⑥번으로
p.460	개정	(2)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p.465	개정	(5)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5년(5억원 이상 국세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5년(5억원 이상 국세와 5천만원 이상인 지방세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p.514	개정	보충학습 (추가) 7.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40
p.522	오류	㉔ 단독주택의 기준 ㉕ ㉖ ㉗ ㉘ 공동주택의 기준 ㉙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 ㉚ 1구의 공동주택-----	㉔ 단독주택의 기준 ㉕ 1구의 건축물----- ㉘ 공동주택 1구의 공동주택 -----
p.541	개정	10. 취득세의 가산세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50% 또는 20%감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30%, 20%감면
p.565	개정	부과 징수 물납 및 분납 → 분납(500만원 초과시)	물납 및 분납 → 분납(250만원 초과시)
p.580	개정	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둘째줄(아래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지방세법」 또는-----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또는-----해당하는 토지	둘째줄(아래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지방세법」 또는-----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또는-----해당하는 토지
p.584	개정	0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둘째줄: 다만, 다음-----보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법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또는 -----해당하는 토지	둘째줄: 다만, 다음-----보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법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또는 -----해당하는 토지

쪽		개정 또는 수정 前	개정 또는 수정 後																
p.606 p.612	개정	(1) 분할납부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500만원을 초과 (2) 분할납부 세액의 기준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하 → 500만원 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 생략	(1) 분할납부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250만원을 초과 (2) 분할납부 세액의 기준 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 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 생략																
p.627	개정	1) 일반지역 2주택 이하의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억 원 이하</td> <td>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td> </tr> <tr> <td>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td> <td>18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8)</td> </tr> <tr> <td>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td> <td>42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td> </tr> <tr> <td>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td> <td>1천 14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6)</td> </tr> <tr> <td>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td> <td>7천 22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td> </tr> <tr> <td>94억 원 초과 ~</td> <td>1억 6천 90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18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8)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42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천 14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6)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7천 22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94억 원 초과 ~	1억 6천 90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18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8)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42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천 14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6)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7천 22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94억 원 초과 ~	1억 6천 90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0)																		
p.628	개정	2)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억 원 이하 ~</td> <td>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td> </tr> <tr> <td>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td> <td>24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td> </tr> <tr> <td>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td> <td>60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6)</td> </tr> <tr> <td>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td> <td>1천 56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td> </tr> <tr> <td>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td> <td>9천 16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0)</td> </tr> <tr> <td>94억 원 초과 ~</td> <td>2억 2천 36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24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60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6)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천 56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9천 16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0)	94억 원 초과 ~	2억 2천 36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24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60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6)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천 560만 원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9천 160만 원 +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0)																		
94억 원 초과 ~	2억 2천 360만 원 + (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p.629 p.650	개정	05.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주택분 -----이 경우 다음의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율 함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령별 세액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td> <td>100분의 10</td> </tr> <tr> <td>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td> <td>100분의 20</td> </tr> <tr> <td>만 70세 이상 ~</td> <td>100분의 30</td> </tr> </tbody> </table>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05.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주택분 -----이 경우 다음의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율 함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령별 세액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td> <td>100분의 20</td> </tr> <tr> <td>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td> <td>100분의 30</td> </tr> <tr> <td>만 70세 이상 ~</td> <td>100분의 40</td> </tr> </tbody> </table>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연령별	공제율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p.630 p.650	개정	(1) 세부담 상한의 비율 ① 일반지역에 2주택 이하 : 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 : 100분의 200 ③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 100분의 300	(1) 세부담 상한의 비율 ① - 좌 동 - ②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 : 100분의 300 ③ - 좌 동 -																
p.642	오류	보충학습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고기한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① ---생략--- ② ---생략---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x---생략-----	보충학습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고기한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① - 좌 동 - ② - 좌 동 - ③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 x ---생략-----																

쪽		개정 또는 수정 前	개정 또는 수정 後
p.680	오류	<p>(3)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속권(移築權)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속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이속권이라 한다)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속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p>	<p><b>p.683 기타자산으로 이동</b></p> <p>(5)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속권(移築權)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속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이속권이라 한다)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속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p> <p><b>04. 주식 및 출자지분</b></p>
p.700 ~ p.779	개정	<p>첫째 줄 : “환산가액” 보충학습 3.: “환산가액” (4)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환산가액” 미니강의 : “환산가액”</p>	<p>(p.701(문제) p.702, p.706 p.707, p.708, p.741, p.746, p.779) “환산가액”을 → “환산취득가액”으로</p>
p.715	개정	<p><b>2) 1세대 1주택의 경우</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p> <p><b>보충학습</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p>	<p><b>2) 1세대 1주택의 경우</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해당 -----</p> <p><b>보충학습</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의 범위</p>
p.715 ~ p.727	개정	<p>2019. 12. 17일부터 2020. 6.30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및 20%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763	개정	<p><b>3) 조정대상지역의 거주기간 예외</b> ①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b>3) 조정대상지역의 거주기간 예외</b> ①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2019.12.17이후 취득한 주택 또는 중전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769	개정	<p><b>2)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으로 2주택의 경우</b> 중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2019. 12. 17일부터 취득(2019. 12.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중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시(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p>	